

무배당 현대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 약관

무배당 현대 자산관리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후 주된 보험계약에서의 가입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제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③ 제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9조(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로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에 가입한 날로 하며 연금개시시점은 제1조에서 정한 연금지급개시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연금지급은 「제1조에서 정한 연금지급개시일 + 2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가입자로 합니다.

제4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가입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2.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가입자는 제1항제1호의 연금지급형태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변경 내용이 다음 계약해당일부터 적용되며, 보험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미 연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변경 후 제2보험기간을 합하여 2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가입자는 제1항제1호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는 이 특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때 가입자의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가입자로 하여 이 특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가입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경우, 회사는 제1조제3항에 따라 제11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가입자의 임의해지)

- ① 가입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1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확정연금 지급 최종일까지입니다.

제2관 부담금의 납입(가입자의 주된 의무)

제8조 (부담금의 납입)

이 특약의 부담금은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수령한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관 급여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 (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연금개시나이에 도달했을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선택한 연금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액을 제2보험기간 매년 계약해당일에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제10조의 적용이율로 1개월, 3개월, 6개월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연금유형	연금액
정액형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10조(적용이율의 적용)에 정한 그 시점의 적용이율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 (매년5%)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10조(적용이율의 적용)에 정한 그 시점의 적용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년마다 5%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 (매 3년10%)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10조(적용이율의 적용)에 정한 그 시점의 적용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 3년마다 1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 (매 5년20%)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10조(적용이율의 적용)에 정한 그 시점의 적용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 5년마다 2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10조(적용이율의 적용)에 정한 그 시점의 적용이율을 적용하므로, 적용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증형의 경우 적용이율 변경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작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적용이율의 적용)

- ① 이 특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이하 "적용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적용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특약의 특별계정 운용자산이 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여 결정합니다.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기준이율]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3년), 회사채수익률(무보증, AA-, 3년), 통화안정증권수익률(1년)의 직전 1개월(산출시점기준 직전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평균이율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운용자산이익률×2 + 지표금리×1)/3

- ③ 제1항의 적용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1.0%인 경우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

하는 경우에도 적립금은 적용이율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니다.

제11조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4관 급여 지급 등의 절차

제12조 (급여 등 청구 시 구비서류)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수익자가 급여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3조 (급여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2조(급여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9조(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가입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15조 (수수료)

이 특약의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제7조의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합니다.

구 분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수수료	매일 적립금의 0.001095890%을 적립금에서 차감 (연0.4%)	매회 연금액의 0.5%

제1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